

	<h2 style="margin: 0;">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57
		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일자	-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“이라고 한다) 미래교육혁신센터(이하 “본 센터“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에 따른 본 센터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1.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대학핵심역량(인성, 창의, 직업기초, 기초학습역량)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·운영
2.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직무역량평가 체계 구축
3. 이외에 대학교육혁신 성과확산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및 운영

제2조(적용범위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학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(편)발 관련 업무
2. 교육품질관리(CQI) 관련 업무
3. 대학 전공 직무역량 성취도 평가 및 환류(질관리) 관련 업무
4. 인성, 직업기초,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
5. 대학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정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6. 교수역량 강화 및 현장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단기 산업체 연수 관련 업무
7. 효만화공모전 등 공모전 사업 관련 업무
8.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의 구성은 부센터장, 연구원, 직원, 조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(센터장의 직무)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6조(설치) 본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- ① 본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본 센터 주관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체평가하기 위해 미래교육혁신센터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③ 본 센터는 교육과정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.

제7조(구성 및 임기) ① 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5인~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미래교육혁신센터자체평가 위원회는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5인~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미래교육혁신센터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.

③ 학과역량교육과정위원회는 각 학과(과정)별로 구성하며, 해당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 전임교원 및 외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.

제8조(기능) ① 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
2. 센터의 제반 업무, 사업 및 연구계획
3.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
4. 센터의 예산과 결산 사항
5. 기타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학과역량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별 전공 역량 설정 및 역량 맵핑의 적절성
2.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육과정 개편안
3. 학과별 직무역량 성취도 평가 방법 및 결과 분석

③ 미래교육혁신센터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 및 자문한다.

1. 센터의 제반 업무, 사업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
2. 센터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
3. 기타 교육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9조(소집 및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 규정 또는 업무지침(세칙)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운 영

제10조(재정) 미래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 대학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11조(운영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